



산토우 초음파 측정기 연구소 VS 선전시 싸이잉다 유한공사, 차오저리앙, 우성강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0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1997)粤知终字第53号
판결 일자	1998년 6월 18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승)
원심원고(피상소인)	1. 산토우 초음파 측정기 연구소		
원심피고(상소인)	1. 선전시 싸이잉다 전자유한공사, 2. 차오저리앙, 3. 우성강 (피고 2, 3 은 상소하지 아니함)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참조 판례			
영업비밀	CST-200 타입 초음파 영상 진단기계 관련 기술비밀		
키워드 (Keyword)	기술비밀(技术秘密), 연구조직(研究小组), 국산화 변형 설계(国产化改型设计)		

02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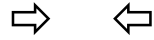
원심 원고 산토우 초음파측정기연구소 (이하 '초음파 연구소')는 1986년 9월 일본 히타치 의료기계 공사와 초음파 영상 진단기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받았다. 당시 초음파 연구소는 차오저리앙, 우성강 등이 포함된 1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고 일본에 파견하여 기술을 배워오게 하였다.

이후, 차오저리앙, 우성강은 초음파 연구소를 사직한 후, 원심 피고 싸이잉다 공사로 이직하였고, 싸이잉다 공사는 짧은 시간에 CTS-200타입과 EUB-220 타입의 초음파 진단기계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에, 초음파 연구소는 원심 피고들에게 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원심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침해행위 중지, 경제적 손실 배상, 사죄광고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전시 싸이잉다 전자유한공사(이하 '싸이잉다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원심 피고(상소인)

초음파 연구소는 CST-200타입 초음파 영상 진단 기계와 관련 기술의 합법적인 권리자 이다.

초음파 연구소가 히타치 의료기계공사의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04 판결 요지

초음파 연구소는 CTS-200 타입 초음파 진단기계 및 프로브 제조기술의 권리자이다. 초음파 연구소의 해당 기술은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보호 조치도 취해졌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

어느 누구도 권리자 초음파 연구소의 허락 없이 기술비밀을 불법적으로 얻어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초음파 연구소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부정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중국 법원에서 영업비밀 관련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초창기 판례이다. 그럼에도, 사건의 경위나 영업비밀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